



# 「그린벨트」의 危機

環境영향평가제 強化와  
民間團體의 갈길

吳 判 龍

정부가 그린벨트 훼손법을 강력히 단속한다고 천명한 지난 8월이후 한동안 훼손법의 단속이 강화된 듯 했으나 울들어 서울에서만 10월말현재 315件的 그린벨트 훼손사태가 적발되었음은 크게 경계할 일로서 두렵기만하다.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사례는 '85년 130건, 86년 189건, 87년 183건, 88년 200건, 89년 358건이란 통계에 나타나듯 88년이후 차츰 그린벨트의 잠식행위가 늘어감을 증명해준다.

더욱이 지난 10월말 건설부는 開發制限區域관리에 대해 「제도개선사항」이란 명칭으로 발표한 규제완화 방안에는 그린벨트內 주택의 증축허용면적의 上向조정, 公共기관에 의한 체력단련시설 또는 부대시설 및 공공청사의 신축허용, 市內버스 차고지의 개설허용등 무려 16개항에 달한다. 그 內容가운데는 3백평 이상 공공건물의 신축때 國務會議議決을 거치던것을 건설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하고 건설부장관의 權限사항 20件中 16件을 道知事·市長·郡守에게, 道知事의 權限사항 26件中 15件을 市長·郡守에게 넘겨주는 大幅의인 규제제한의 下向이양이 포함돼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것인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다. j신문사설에서 지적하듯이 그린벨트에 대한 規制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水準을 넘어 마치 保護대신 開發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印象밖엔 다른 느낌이 없다.

그린벨트를 위시하여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에 사유재산이 묶여있는 소유주의 고통이나 재산상의 손실은 부인할수 없다. 다만 자연공원이나 그린벨트를 設定한 본래의 취지나 목적을 일탈치 않는 국토보존의 崇高한 次元에서 소유자나 그곳에서 생활의 기반을 갖고 있는 住民의 권익은 다른 方法으로 강구하고 존중해야 할것이다.

최근들어 환경관계 민간단체의 공청회나 매스컴의 종합적 여론을 보면 「정부기관이 환경파괴를 선도」하고 있는것으로 인식되어 가고있다. 몇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린벨트훼손과 자연파괴행위가 있었으며 어떻게 범법자를 처리했기에 증가일로에 었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수없는 일이다.

보도에 의하면 환경처가 지난 6월20일부터 1개월 동안 환경업무와 관련이 깊은 전국 7대도시 公務員, 環境專門家, 環境管理人등 4백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오염에 관한 시민의식 설문조사」결과 서울 등 대도시의 대기오염상태에 대해 84.4%가 「매우 심각하며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다.

土壤·水質·海岸·大氣오염의 심각성 못지않게 89年 現在 우리나라 電力生産의 50.1%를 原子力이 차지하고 있는 엄연한 事實에 비추어 適地에 빨리 폐기물處理場을 마련해야 하며 先進國처럼 自然에너지 轉換이 促求된다. 安眠島사태는 政府가 폐기물처리장을 구상했든, 연구시설을 하려했든 事實대로 밝혀 住民들을 安心시키고 理解를 얻었다면 좋았다. 그곳은 泰安국립공원 구역에 일부가 들어있는 곳기에 住民들은 오래전부터 국민觀光地개발을 원했던 곳으로 듣고있다.

국립공원속에 대형 레포츠단지나 발전시설이 들어가고 국립공원구역을 조금 벗어났다하여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마구 파헤쳐 주민생활 향상이란 명분으로 콘도건설을 주저하지 않는 행위, 上水源 보호구역 인근의 골프場許可등 모두가 名分이야 어떻든간에 그린벨트 대량훼손 사례와 일맥상통하고 있는 오늘의 實態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하루속히 법적 구속력있는 환경영향평가제를 의원입법하여 민간단체 주도로 國民的合意를 얻어 파괴행위를 저지해야 한다. 그리고 자연보호, 환경보호, 문화재보호관계 법을 개발법보다 上位에 두도록해야 當代에 모든것을 개발하려는 시행착오를 막을수 있을 것이다.

[筆者：本會 事務局長]